안건 번호

제출년월일 : 2023년 1월 30일 담 당 자 : 영양교사 최〇〇

2022학년도

2022학년도 학교급식 이행사항 보고 및 2023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(안)

2023. 2. 15.

포 천 초 등 학 교

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(개정 2009.2.25)

- 학교급식법 시행령 -

제2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

- ①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.
 - 1. 학교급식 운영방식, 급식대상, 급식횟수,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
 - 2.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 - 4.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
 - 5.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6.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
 - 7.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)

-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, 영양·위생·식재료·작업·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(2021년 학교급식기본방향)

2022학년도 학교급식 이행사항 보고

학교급식법시행령 제 4조 3항에 의거 2022학년도 급식 이행사항을 보고하고자 함.

(작성일자: 2023.1.26)

| | 117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관련업무 | 시기 및 계획 | 대 상 | 내 용 | 이 행 사 항 |
| 급식운영 | 매달 | 학생,교직원 | 1.급식인원 : 920명 2.급식일수 : 중식 - 187일 3.급식횟수 : 주5회 | 1.급식인원 : 1-6학년, 교직원 급식 2.급식일수 : 중식 - 187일 3.급식횟수 : 주5회 |
| 급식비 중 | | | 식품비 사용 적정비율 65% 이상 | 식품비 사용비율 100.9% 실시 (식품비 지원 금액 모두 사용) |
| 식품비 사용비율 | 연중 | 급식실 | 2월 급식 마감 후 학교 홈페이지 공개예정 | 2022학년도 급식비 결산은 홈페이지 추후 공개 (행정실) |
| 영양기준량 | 연중 | 학생, 교직원 | 2022학년도 본교 급식 평균영양량 준수범위: - 열량: 600.24kcal±10%, - 탄수화물(55-70%), 단백질(7-20%), 지방(15-30%) | 학교급식기준평균 영양량 양호 |
| 급식물품 품질관리기준 | 매달 | 급식실 | 1.쌀: 국내산 수확연도 1년 이내의 쌀 2.축산물: 쇠고기-한우1등급 이상 돼지고기-품질등급 1등급 이상 닭고기-품질등급 1등급 이상 3.농산물: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"상"이상인 것 4.수산물: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(수협중앙회) 5.완제품, 수입산 식재료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 사용 6.김치류: 경기농협김치 | 실시 |
| 식재료 조달방법 | 매달 | 급식실 | 농산물류, 공산품류, 수산물류, 육류, 김치류 :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와 거래 | 실시 |
| 학교급식 모니터링 | 매월 | 학부모 모니터요원 | 식재료의 검수과정 및 조리과정 참관, 위생관리 실태 점검, 배식과정 참관 및 참여 |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2학기 미실시 |
| 급식소위원회 | 연중 | 급식 소위원회위원 | 급식 운영등 심의 회의, 급식 모니터링 실시 | 급식소위원회 활동 : 연 1회 실시 |
| 영양교육 | 연중 | 급식실 |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영앙교육 실시 급식시간 식생활 지도 영앙식생활수업 실시 (1,3,5학년 영양수업 실시) | 실시 |
| 정기소독 | 2달에 한번 | 급식실 | 급식실 정기방역소독: 하절기2개월, 동절기3개월 | 실시 |
| 위생교육 | 매달 | 조리종사원 | 위생, 안전, HACCP교육 실시, 산업안전교육 실시 | 총 12회 |
| HACCP 관리 | 연중 | 급식실 |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HACCP회의, 교육, 기록 관리 | 실시 |
|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| 연중 | 급식실 | 가정통신문, 급식실 게시판,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| 실시 |
| 만족도, 기호도조사 | 1학기 | 급식실 | 연 2회 식습관, 만족도, 기호도 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| 실시 |
| 식중독대책반 구성 | 연중 | 해당 교직원 | 급식사고 비상대책반 조직 구성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| 실시 |
| 위생안전점검 운영평가 | 학기 별 | 급식실 | 포천교육지원청 1학기 위생점검 2학 위생,운영점검 | - 1학기 위생안전점검 A등급 - 2학기 위생안전점검 A등급,운영평가 A등급 |
|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| 연중 | 학생 | 교육급식부 학생자치회와 연게한 홍보 | 실시 |
| | | | | |

기타1. 2022학년도 교직원 급식비

- 교직원 급식비(3,870원)는 식품비로 모두 사용함

기타2. 2022년도 학교급식경비 식품비 단가 인상

1)적용시기: 2022. 9월 ~ 2023. 2월까지

2)구간별 식품비 단가 7%인상: 기존 2,590원-> 2,780원으로 190원 인상

2023학년도 학교 급식 운영계획(안)

□ 안건 1. 학교급식 대상, 급식횟수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

1. 급식대상 및 급식형태

조사기준 2023.1.26.

| 운영형태 | 배식형태 | 구분 | 구분 급식대상 급식인원(예정)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|--|
| 직영 | 식당배식 | 중식 | 본교 초등, 교직원 | 초등학생 840명(1학년 111명), 교직원 50명 예정 급식인원 890명 | 초등 188일 | | |

2. 급식 시간

1) 1,2학년: 3교시 후 2) 3,4학년: 4교시 후 3) 5,6학년: 5교시 후

4) 교직원 : 12:00 ~ 13:00 (60분)

3. 급식 횟수

- 초등학교 188일

- 지원일수 범위 내 실제 급식일수 지원

- 월별급식계획은 2023년도 학사일정 확정 후 결정

※ 2023학년도 188일 무상급식지원이며,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영양기준량선정 (근거 :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)

-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(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) 2009.2.25 개정

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아래와 같다.

1)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, 활동 정도,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2)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,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±10%로 하되, 탄수화물 : 단백질 : 지방의 에너 지 비율이 각각 55~70% : 7~20% : 15~30%가 되도록 한다.
- ②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,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③ 비타민A, 티아민, 리보플라빈, 비타민C, 칼슘,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.

□ 본교 영량기준량 산정(학교급식의 영양관기준 제5조 제1항 관련)

 ○ 에너지 기준량(kcal)
 ○ 본교 영양량 산출기준

 - 최저기준량(-10%기준) :540.21
 - 총기준량(각기준량×인원수) ÷ 전체 급식인원

 - 최고기준량 (+15%기준) : 660.26
 ○ 탄수화물(55-70%),단백질(7-20%), 지방(15-30%)

본교 평균기준량: 에너지(589.97kcal), 단백질(13.99g),비타민A(118.76RAE), 티아민(0.23mg), 리보플라민(0.25mg), 나트륨(900.01mg), 비타민C(16.17mg), 칼슘(209.43mg),철분(2..57mg)

자체영양기준량등록

2025,01,26, 14:57 (4,04) 타FAQ /질의등록 120연락처 @도움말 문절차서 @동영상

| 학년도 2023 | Q 조회 | | | 영양기준령 영양기준령 | · 소용약교 급식인원이 서약 ·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영양 | 연과 교육면으로 구 기준량을 직접 산출력 | F되어 있/ 하시기 바탕 | 합니다.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급식인원 기준년월 | 2023.03 | | | | | | 병원 | ;기준랑산 출 처리 | 저장 | 취소 |
| | 학교명 | | 학교구분 | | 에너지 | | | | 간백질 | |
| 포천초등학교 | | | 초등학교 | | | 589.97 (kcal) | | | 13 | 3.99 (g) |
| 구분 | 평균필요 | 8 | 권장섭취 | 3 | 구분 | 평 | 군필요량 | | 권장섭취량 | |
| 비타민A | 118.76 | (ug RAE) | 169.62 | (µg RAE) | 비타민C | | 16,17 | (mg) | 20.42 | (mg) |
| 티아민 | 0.23 | (mg) | 0.27 | (mg) | 칼 슘 | | 209.43 | (mg) | 252.30 | (mg) |
| 리보플라빈 | 0.25 | (mg) | 0.33 | (mg) | 철 | | 2.57 | (mg) | 3.29 | (mg) |
| 나트륨 | 900.01 | (mg) | 900.01 | (mg) | | | | | | |

[영양 기준표]

| 구분 | 성별 | 선병 | 에너지 | | 단백질 | Ug R | | E[O] | | 리보플 (mg | | HIEH (mg | | 칼 (mg | | 설 (m) | | L) E (mg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|
| | | (kcal) | (g)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평균 | 권장 | | |
| 0.410111 | 남성 | 400.0 | 7.1 | 66.00 | 85.00 | 0.12 | 0.15 | 0.15 | 0.17 | 10.00 | 12.80 | 142.00 | 170.00 | 1.50 | 2.00 | 900.00 | 900.00 | | |
| 유치원생 | 여성 | 400.0 | 7.1 | 66.00 | 85.00 | 0.12 | 0.15 | 0.15 | 0.17 | 10.00 | 12.80 | 142.00 | 170.00 | 1.50 | 2.00 | 900.00 | 900.00 | | |
| 초등학생(1~3 | 남성 | 570.0 | 11.7 | 104.00 | 150.00 | 0.17 | 0.24 | 0.24 | 0.30 | 13.40 | 16.70 | 200.00 | 234.00 | 2.40 | 3.00 | 900.00 | 900.00 | | |
| 학년) | 여성 | 500.0 | 11.7 | 97.00 | 134.00 | 0.20 | 0,24 | 0,20 | 0.27 | 13.40 | 16.70 | 200.00 | 234.00 | 2.40 | 3.00 | 900.00 | 900.00 | | |
| ·등학생(4~6 | 남성 | 670.0 | 16.7 | 137.00 | 200.00 | 0.24 | 0.30 | 0.30 | 0.37 | 18.40 | 23.40 | 217.00 | 267.00 | 2.70 | 3.70 | 900.00 | 900.00 | | |
| 학년) | 여성 | 600.0 | 15.0 | 130.00 | 184.00 | 0.27 | 0.30 | 0.27 | 0.34 | 18.40 | 23.40 | 217.00 | 267.00 | 2.70 | 3.40 | 900.00 | 900.00 | | |

▶ 식단계획

- 1) 식단작성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식단의 다양화와 기호도를 위하여 본교는 학교급식법 영양기준량의 범위 내에서 +10%, -10% 조정하여 식단을 작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 한다.
- 2)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한다.
- 3) 곡류 및 전분류, 채소류 및 과일류, 어육류 및 콩류,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을 작성한다.
- 4)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식단이 되도록 한다.
- 5) 학생의 기호도를 반영하여 조리방법을 연구한다.
- 6) 화학조미료는 사용을 하지 않고,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하여 음식교유의 맛을 내도록 한다.
- 7) 염분,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.

▶ 기본식단구성

| 구 분 | 분 류 | 식 단 |
|------|--------------|---|
| - AI | 밥 | 혼식(일반미에 잡곡 혼합), 영양쌀 주 1회 공급(강황, 클로렐라, 라이코펜 등) |
| 주 식 | 양식류 포함한 일품요리 | 일품 요리로 1주 1~2회 정도 공급 |
| | 국 | 국, 찌개, 탕류를 계절식품 이용하여 다양하게 공급 |
| 부 식 | 반 찬 | 김치류를 포함한 1식 3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하여 공급 |
| | 후 식 | 일주일에 1회 이상 과일 및 유제품을 제공하여 비타민과 칼슘 보충 |

□ 안건 2.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

1.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

- ㅁ 법령에 따른 식재료품질기준 준수 이행
-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.

1) 농산물

- ①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15조 및 「대외무역법」 제23조에 따라 "원산지"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. 다만. "원산지"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.
- ②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.
- ▶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7조에 따른 "친환경농산물인증품"
- ▶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"품질인증품"
- ▶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7조의2에 따른 "우수농산물인증품"
- ▶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7조의5에 따른 "이력추적관리품"
- ▶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"지리적특산품"
- ▶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4조에 따른 "표준규격품"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"상"등급 이상인 농산물, 다만,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"상" 이상에 해당하는 것.
- ③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.
- ④ 부득이하게 전처리(前處理)농산물(수확 후 세척, 선별,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)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.
- (1) 제품명(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)
- (2) 업소명(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)
- (3) 제조연월일(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)
- (4)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
- (5) 내용량
- (6) 보관 및 취급방법
- ⑤ 수입농산물은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, ②목 내지 ④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.

2) 축산물

- ①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(食用卵)은 공 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(1)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 된 식육으로 한다.
- (2)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(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 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로 한다.
- ②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 항으로 한다.
- (1) 쇠고기 : 「축산법」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
- (2) 돼지고기 : 「축산법」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
- (3) 닭고기 : 「축산법」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
- (4) 계란 : 「축산법」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
- (5) 수입축산물: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, (1) 내지 (4)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.

3) 수산물

- ①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대외무역법」 제23조에 따른 "원산지"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.
- ②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"품질인증품", 동법 제9조에 따른 "지리적표시품" 또는 상품가치가 "상"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전처리수산물
- (1) 전처리수산물(세척, 선별,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 된 식재료. 이하 같다)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

- 가공 처리(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.
- (가)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·가공시설
- (나)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「식품위생 법 시행규칙」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중 어류면체류 식품제조·가공업소
- (2)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.
- (가) 제품명(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)
- (나) 업소명(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)
- (다) 제조연월일(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)
- (라)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(원산지, 품질등급, 생산연도)
- (마) 내용량
- (바) 보관 및 취급방법
- ④ 수입수산물은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

4) 가공식품 및 기타

-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.
 - (1) 「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」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
 - (2)「산업표준화법」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
 - (3)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"지리적 특산품"
 - (4)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
 - (5)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"지리적 표시품"
 - (6)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 식품
 - (7)「식품위생법」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·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
 - (8)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
- (9)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,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추사무 가고포
- ② 수입 가공식품은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.
- ③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5) 예외

- ① 수해, 가뭄,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,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성행할 수 있다.

2. 완제품 공급 승인

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학교조리실에서 조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완제품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 할 수 있다. [개정 2009.2.25]

- 1) 완제품의 범위 학교급식 조리·가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품
- 2) 기준
- ①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학교조리실에서 조리자체가 불가능 하거나
- ② 학교자체 조리가 곤란한 것으로 완제품 구매급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식품
- ③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식품이 용기, 포장, 보존방법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적합한 식품
- ④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

3)승인요청 품목

| | | 표 내용과 같이 완제품 | 을 사용하고자 합니다.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
| | 구 분 | 품 목 | 완제품 급식사유 | | | | |
| | 유제품 | 우유, 요구르트, 치즈, 호상요구르트 등 | 성장기 아동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칼슘, 철분 등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함(선호도 높음) | | | | |
| | 떡류 | 경단, 송편, 절편, 가래떡, 떡볶이떡 등 | 가정에서 접하기가 어렵고 아동들의 선호도도 떨어지 므로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음식을 접하게 함. | | | | |
| 완 제 | 빵류 | 토스트, 모닝빵, 제과점빵, 햄버거빵 등 | 대부분 밥, 국, 반찬으로 제공되는 식단에 변화를 주어 아동들의 기호가 높은 빵을 급식함으로써 아동들의 기 호를 만족시킬 수 있음 | | | | |
| 품 | 과일류 | 귤, 딸기, 바나나, 사과, 토마토, 포도, 거봉, 파인애플 등 | 비타민B, 비타민C,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, 후식으로 제공 | | | | |
| | 통조림류 케찹류 | 딸기쨈, 케찹, 머스타드소스, 참치캔, 꽁치캔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쥬스류 | 과일쥬스(감귤, 애플, 캐플) 등 | 비타민B,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, 후식으로 제공 | | | | |
| 반 | 김류 | 맛김(구운김) | 아동들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불가능함. | | | | |
| 제 | 장아찌류 | 단무지, 오이지, 오이피클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불가능함 | | | | |
| 품 | 두부류 | 두부, 순두부, 연두부, 콩비지, 유부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묵류 | 도토리묵, 녹두묵, 메밀묵, 청포묵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어육제품 | 어묵, 햄, 소시지, 맛살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면류 | 칼국수, 소면, 우동, 쫄면, 당면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기 | 냉동식품 | 생선까스, 햄버거스테이크, 만두, 미트볼, 핫도그, 찐빵 등 | 하교 실정에 따라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 일부 사용할 수 있음 | | | | |
| 타 | 양념류 | 간장, 된장, 고추장, 마요네즈, 후추, 소금, 볶은 깨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담거나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제분류 | 설탕, 밀가루, 부침가루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담거나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| | 유지류 | 버터, 마가린, 참기름, 식용유, 올리브유 등 | 조리실에서 직접 담거나 제조가 불가능함 | | | | |

3. 수입산 식자재 사용 승인

1) 승인요청사유

- ① 학교급식품은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2) 승인 적용기간: 2023년 3월 2일 ~ 2024년 2월 28일 까지

3)심의 품목

표 내용과 같이 수입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.

| 구 분 | 품 목 | 사용 사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농산물 | 검정깨, 건목이버섯 등 |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국내 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극소량 생산되어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수입산을 사용한다. |
| 수산물 | 동태, 대구, 갈치, 낙지, 쭈꾸미 등 |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 어획되어 고 가로 유통되거나 어획이 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 산을 사용한다. |
| 공산품 | 유지류, 통조림류, 소스류, 제분류, 떡류, 어묵류 등 |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|
| 과일류 | 바나나, 오렌지, 파인애플, 키위, 건포도 등 | 아동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|
| 기타 가공품 | 묵류, 견과류 등 |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|

□ 안건 3.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

1.조달방법

1) 학교급식품은 직접구매가 곤란하므로 납품업체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상기 법령 에 의한 식재료들을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.

『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 ②항: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: 제 43조 또는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"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』

2)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

| 계약방법 | 장 점 | 단 점 | 보완점 |
|------------|--|--|--|
| 공개 경쟁입찰 | * 다수업체의 참가로 공정성과 기회균등 부여 | * 물가변동에 따른 현시세와 납품가의 불일치 *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 업체 선정의 어려움 * 최저 단가의 낙찰로 물품의질 저하 우려 | * 전문 업체별, 품목별로 입찰실시 *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선정 요구 * 식품별 규격의 정확한 제시 |
| 수의계약 | * 업체 간의 과다경쟁 예방 *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업체선정 유리 * 질 좋은 물품의 납품 요구가능 | * 독점에 따른 고가 납품 우려 * 계약의 공정성 의혹 | * 공신력있는 기관의 가격반영 (철저한시장 조사를 통한 가격 비교) * 철저한 물품 검수 요구 (복수검수 운영) |

2. 업체 선정 기준

- 1) 모든 품목은 공신력 있는 기관(HACCP지정업체)을 우선으로 한다.
- 2) 농산품, 김치류, 떡류, 일부 수산물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에 적합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농산물 학교로 운영하도록 한다.

- 3) 축산물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에 적합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경기도교육청 우수축산물 학교로 운영하도록 한다.
- 4) 수산물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에 적합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공 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다.
- 5) 우유류는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중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다.
-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- 28282 (2015.12.15.) 관련 근거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 입찰을 실시하는 등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을 준수하도록 조치(우유급식예산 절감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함)
- 6) 공동구매 외 공산품(유제품류 포함)은 포천교육지원청 공동구매사업으로 계약된 업체 또는 소규모 학교,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한 본교 납품이 가능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한다.
- 7) 납품업체는 반드시 정하여진 기간과 약속 장소에서 검수를 받도록 하며 3회 이상 반품 조치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추후 계약에 응할 수 없도록 한다.

[2022학년도 납품업체 현황]

| 구분 | 업체명 | 계약기간 | 계약방법 | υ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산물류 (김치류, 떡류, 일부 수산물) | 경기친환경조공동 (배송 경기롯데)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경기도교육청 친환경농산물 학교 |
| 공동구매 일부품목 | 아이쿱친환경급식(주) (배송 경기롯데) | 12개월 | 교육청 계약 | 포천교육지원청 일부품목 공동구매사업 계약업체 |
| 공산품 | 계약업체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(지명견적요청)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|
| 육류,가금류 | 가금류 미트빌연합사업단 |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경기도우수축산물 학교 |
| 수산물류 | 수협단체급식사업단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농림부,식약청 HACCP 인증업체 |
| 우유 | 서울우유 | 1년 | 공개경쟁입찰 | 농림부 HACCP인증업체 |
| 곡류 | 관인농협 | 1년 | 전자수의계약 포천시청 지정 | |

[2023학년도 납품업체 안건]

| 구분 | 업체명 | 계약기간 | 계약방법 | មាភ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산물류 (김치류, 떡류, 일부 수산물) | 경기친환경조공동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경기도교육청 친환경농산물 학교 |
| 공동구매 일부품목 | | 12개월 | 교육청 계약 | 포천교육지원청 일부품목 공동구매사업 계약업체 |
| 공산품 |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(지명견적요청)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|
| 육류,가금류 | 미트빌연합사업단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경기도우수축산물 학교 |
| 수산물류 | 수협단체급식사업단 | 1개월 | 전자수의계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 계약) | 농림부,식약청 HACCP 인증업체 |
| 우유 | | 1년 | 공개경쟁입찰 | 농림부 HACCP인증업체 |
| 곡류 | | 1년 | 전자수의계약 포천시청 지정 | 관인 친환경 유기농쌀 또는 포천 쌀 |

□ 안건 4. 2022학년도 급식비 책정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

관련 근거: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-1298(2023, 1, 12.)

1. 급식학생수별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 단가표

○ (공립)유·(공사립)초·중·고

(단위: 명, 원)

| 구분 | 학생수 | 1 50 | 51 ~ 100 | 101 200 | 201 300 | 301 ~ 400 | 401 500 | 501 600 | 601 700 | 701 800 | 801 900 | 901 1000 | 1,001 이상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공립유 | 2,980 | 2,950 | 2,860 | 2,780 | 2,690 | 2,620 | 2,540 | 2,460 | 2,390 | 2,310 | 2,250 | 2,170 |
| e l West | 초 | 3,900 | 3,650 | 3,560 | 3,360 | 3,260 | 3,170 | 3,070 | 2,970 | 2,890 | 2, <mark>8</mark> 00 | 2,710 | 2,660 |
| 식품비 | 중 | 4,530 | 4,280 | 4,140 | 4,060 | 3,980 | 3,900 | 3,830 | 3,740 | 3,660 | 3,600 | 3,520 | 3,460 |
| | 고 | 4,640 | 4,580 | 4,480 | 4,390 | 4,300 | 4,220 | 4,130 | 4,040 | 3,970 | 3,880 | 3,810 | 3,780 |
| | 공립유 | 310 | 310 | 300 | 290 | 280 | 270 | 260 | 250 | 240 | 230 | 230 | 220 |
| ood il | 초 | 490 | 490 | 470 | 450 | 430 | 410 | 400 | 380 | 370 | 350 | 340 | 330 |
| 운영비 | 중 | 530 | 530 | 490 | 470 | 440 | 410 | 400 | 380 | 370 | 350 | 340 | 330 |
| | ユ | 600 | 600 | 570 | 540 | 520 | 480 | 460 | 440 | 420 | 400 | 380 | 360 |
| | 공립유 | 3,290 | 3,260 | 3,160 | 3,070 | 2,970 | 2,890 | 2,800 | 2,710 | 2,630 | 2,540 | 2,480 | 2,390 |
| 저원 | 초 | 4,390 | 4,140 | 4,030 | 3,810 | 3,690 | 3,580 | 3,470 | 3,350 | 3,260 | 3,150 | 3,050 | 2,990 |
| 타 | 중 | 5,060 | 4,810 | 4,630 | 4,530 | 4,420 | 4,310 | 4,230 | 4,120 | 4,030 | 3,950 | 3,860 | 3,790 |
| | 고 | 5,240 | 5,180 | 5,050 | 4,930 | 4,820 | 4,700 | 4,590 | 4,480 | 4,390 | 4,280 | 4,190 | 4,140 |

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식품비, 운영비 지원 / 초중고 LPG 사용학교 100원 별도 추가 지원 공동조리교 및 비조리교 각급학교 급실학생수 개별 적용

2. 학교급별 학교급식경비 자치단체 예산 분담 범위



- ※ 2023년 학교급식 지원단가는 「식품비+운영비」로 지원, 기존 지원단가 내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지원단가가 아닌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지원
- ※ 기존 단가 내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지원방식의 변경일 뿐 급식경비 예산 <u>분담범위</u>는 2022년과 동일하며, 기존 단가내 조리실무사 인건비 포함 분담 예산임에 유의

3. 2023학년도 교육청 지원 무상급식비 내역

(단위 : 원)

| 무상급식 (도청,시청, 교육청지원) | 식품비 (70%) | 운영비 (10%) | 인건비 (20%) | 무상급식비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|--|--|
| 2022학년도 도시형 | 2,590 | 340 | , | 2,930 | | | | | |
| 2023학년도 도시형 | 2,800 | 350 | - | 3, 150 | | | | | |
| 비고 | 무 | 무상급식= 68.06% (교육청+도청) + 31.94% (시청) | | | | | | | |

4. 2023학년 교직원 수익자 부담금 내역

- 초등학교 교직원 급식비: 4.230원
- 위 단가는 2023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의 식품비, 운영비 평균단가(초·중)와 지자체지원 금, 물가상승분을 반영
- 학생급식비가 제안단가를 초과하는 경우. 추가 필요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 가능
- 공동조리교·통합학교·특수(통합)학교의 경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단가 결정 ※ 향후에도(2024년~) 금번 산출방식 적용

5. 교직원 수익자 급식비 감액 징수

- 사전연락하여 연속 5일 이상 출장 및 병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일수 (2023학년도 우유급식 실시 여부는 교육청 지침에 따름)

6. 수익자부담 급식 우유대금 징수

- 2023학년도 학생.교직원 대상으로 상. 하반기 수납 징수하며 수납확인 후 우유 지급

5. 수익자부담 급식 우유대금 환급 규정

-전출생 - 전출날짜(근거서류: 담임교사의 전출확인서)등 증명에 의거하여 환불 -개인적인 사유(질병, 사고, 기타)로 5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일수를 빼고 징수하거나 징수했을 경우 장기결석일수만큼의 우유급식비를 환불 단, 결석사유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행정실, 급식실로 연락한 시점에서 다음날부터 환급한다.

6. 급식비 세입, 세출 예산(안)

작성기준일: 2022.12

| 세입 | 609,134,400 | 산 출 내 역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--|
| | | | 인원 | 일수(횟수) | 단가 | 총금액 | | | |
| | | 01-06학년 (교특 +포천 시지원) | 860 | 188 | 3,150 | 509,292,000 | | | |
| | | | | | | Ü | | | |
| | | 교직원(수익) | 60 | 188 | 4,230 | 47,714,400 | | | |
| | | 소계 | 920 | | | 557,006,400 | | | |
| | | 우유대금 | 600 | 181 | 480 | 52,128,000 | | | |
| 세출 | 609,134,400 | | | | | | | | |
| | 식품비 | 식재료 구입비(교록+포천 사+교직원) | 10 | 1 | 49,568,080 | 495,680,800 | | | |
| | | | | | | (| | | |
| | | 소계 | | | | 495,680,800 | | | |
| | 우유비 | 우유대금 | 600 | 181 | 480 | 52,128,000 | | | |
| | 운영비 | 산출내역 | | | | | | | |
| | | 냉난반용 도시가스비 | 1 | 10 | 500,000 | 5,000,000 | | | |
| | | 취사용 도시가스비 | 1 | 10 | 1,400,000 | 14,000,000 | | | |
| | | 전기요금 | 1 | 10 | 300,000 | 3,000,000 | | | |
| | | 상수도요금 | 1 | 10 | 100,000 | 1,000,000 | | | |
| | | 물식물쓰레기처리운반비 | 1 | 10 | 650,000 | 6,500,000 | | | |
| | | 급식소모품비 | 1 | 10 | 3,082,560 | 30,825,600 | | | |
| | | 기타일반운영비 | 1 | 10 | 100,000 | 1,000,000 | | | |
| | T. | 소계 | | | | 61,325,600 | | | |

□ 안건 5.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

1. 기본방침

-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과 체력증진
-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-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

2. 우유급식대상

가. 무상급식 -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(중식) 및 학교우유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1순위부터 배정된 인원수대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유상급식 - 무상급식을 제외한 일반 초등학생(용량 및 가격은 유상급식과 동일) 중 희망자

3. 우유급식단가 및 품목

가. 단가 : **480원**/200㎖(정부 고시가격으로 업체 선정시 단가 결정, 정부고시가격은 변동될수 있음)

나. 공급품목 : 백색우유 및 강화우유(원유99%이상)를 기본으로 단일품목을 주5회(급식일)공급하기를 제안 함.

4. 우유급식 실시 여부

- 1안) 우유급식 미실시 교실내 칸막이 없이 우유 음용시 감영병 확산 우려, 학교급식 유제품 제공으로 칼슘량 확보
- 2만) 우유급식 실시 신학기 '우유급식 실시 여부'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우유급식 희망 50% 이상시 실시 또는 70% 이상시 실시 등
- 3안) 기타안 코로나 방역 지침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

□ 안건 6. 급식비 면제에 관한 사항

1. 급식비(우유값 미포함) 자체 면제대상 선정 심의

- (1) 자체 면제 대상자
- ①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7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면제 하고자 함.
- ② 학교급식모니터링 학부모(우유제외), 실버도우미 6명(우유제외), 보존식 1식(우유1개포함)

가. 세부사항

- 관련: 학교급식기본방향 63p.(교육과-6539(2022.3.4.)) 2022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알림(학교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)

"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 급식실 근무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2항 9호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후 급식비 면제 여부 결정 가능"에 의거하여, 본교 학교급식종사원(조리사1명, 조리실무사6명)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및 인근학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 면제여부를 심의(자문) 받고자 합니다.

- 2.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(중식) 및 학교우유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(안)
- *현재는 무상급식으로 해당없는 사항이나, 우유급식대상자 선정 및 학기 중 학부모부담 급식 사례 발생시 즉시 가동하기 위한 제도임.
- 1) 기본방침
- 가.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및 학교 우유비 지원
- 나.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- 2)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
- 가. 선정기준
-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(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)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
- (단. 우유 알러지 등으로 음용을 회피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
- 타 시·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,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무상급식 지원 중단
- 나. 선정절차(2021년 3~4월 중 "저소득층통합지원시스템"에 의함)

| 대상학생자료 수집, = | 추천 | "저소득층통합지원시스템" 에 의한 소집회의 | | 대상 선정·지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|---|
| ↓ | · 당명서 | - 추천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- 지원 재원내에서지원 대상학생 결정 ↓ 회의록 작성, 확인 | • | - 학교장 최종 선정 결정(결재) - 저소득층 자녀 통합지원시 스템에의해 학교급식비(중식)지 원 |

다. 선정시기

- 저소득층자녀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해 본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도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과 시기를 같이 한
- ※ 단,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도 "저소득층자녀통합지원시스템"에 의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라. 지원재원
- 추천자 우선순위별로 아래의 순서에 의해 지원함.
- ① 교육비특별회계 중식지원비 재원 : 2019.3-4월중 배정됨.
- ② 외부지원 재원 : 연중 외부지원자 발생시 배정함.
- 3. 기타 무상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
- <u>-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(중식) 및 학교우유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1순위부터 배정된 인원수대로 지원</u>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□ 안건 7.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
- 1. 검수 및 모니터링 활동으로 학부모 급식 참여 확대
- 1) 학교 급식물품 검수란?

- 검수는 발주에 맞는 품질, 수량, 신선도, 위생상태 및 가격과 일치되는가를 확인 하여 적절한 물 품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업무
- 2) 학교 급식물품 검수운영 목적
- 학부모의 식재료 검수 참여로 급식의 투명성과 위생관리 강화
- 3) 운영방법
- 시기 : 월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단, 학교사정이나 검수요원의 참여일정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상호 조정한다.)
- 4) 검수 및 입회인원: 영양교사1명, 학부모 1명, 조리사1명, 조리실무사(검수당번) 1명
- 5) 검수시간
- ①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유제품 : 07:30 ~ 08:30
- ② 김치류 : 08:30 ~ 09:30
- 6) 학부모 참여 방법: 희망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월2회 1명씩 참여 실시, 어머니회 학부모님이 당일 급식 시식 후 모니터링 작성
- 7) 학부모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
-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 및 이해와 협조를 구함.
- ② 급식품 납품업자에게 항시 긴장감을 줌으로써 질 좋은 식품의 납품을 유도한다.
- ③ 학교 급식물품 검수에 다수인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.
- ④ 영양교사와 학부모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원활한 급식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.
- 2. 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의 급식참여
- 1) 운영 위윈회
- ① 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~31조
- ② 역할
-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
- 급식업체 선정기준,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
-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
-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(자원봉사활동 등) 방안
-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
-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 대상자의 결정
- 학교급식 또는 위타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
-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2) 급식 소위윈회
- ① 이유
-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의 학교 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② 구성원
-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명
- 학부모 대표 3명
- 교직원 대표 1명
- 영양교사 간사 총 7명
- ③ 역할
-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
-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

④ 활동

- 식재료 업체 선정,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비교 평가
- 식재료 검수, 조리과정 등을 점검
- 급식비 책정, 급식비 예산 결산에 관하여 실무를 검토
-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, 무상우유대상자 선정
- 급식관련 기기, 기구 업체선정 심의
- 기타 학교운영위원하에서 급식소위원히 확동으로 정한 사항

□ 안건 8. 기타 사항

1.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- 가. 남은 운영비, 인건비 잔액은 식품비, 운영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함.
- 나. 단수, 단전, 학교행사 등으로 조리가 불가능하여 급식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- 완제품 공급승인 여부 또는 급식을 미실시 여부 결정

2. 학교근식종사자 결원에 따른 근식 조달 대처방법 대책(파언 및 결원 발생시)

(관련 :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-11967(2014.11.17.)호)

- ◎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지배·간섭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됨으로 각급기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
- 노동조합의 노동쟁의(파업)에 대한 부정적인 언동 및 위협하는 행위
- 각종집회 및 쟁의행위에 참가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
-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시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표현 사용
- 파업에 따른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
-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유급대체 인력 투입
- 파업 참여 비판 등의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(쟁의행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는 가능하나 허위사실로 노조 비판 금지)
- 가. 조리종사원들의 파업 및 결원에 따른 급식 조달 방법 대책(안)
- 1)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위행위(파업)가 확정시 또는 결원 발생시
 - 기존 식단 발주 취소
 - 학생 및 교직원 간편식
 - (빵 또는 떡, 과일, 요구르트, 호상요구르트, 우유 등) 으로 식단 변경하여 발주
 - 학부모 안내장(식단변경 및 파업관련 내용) 및 문자발송
- 2) 조리종사원의 파업참여율 또는 결원에 따른 대책방안

| 번호 | 파업참여율또는 결원률(%) | 대 책 방 안 | 비고 파업(결원) 참가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| 20%미만 | 조리인력을 감안한 간편조리 식단 변경제공 (전체학년 정상급식 실시) | 본교기준 1명 |
| 2 | 20%~50%미만 | 일부 완제품, 반제품, 간편식 등으로 식단 간소화 예) 반제품, 간편식의 예 : 김, 냉동식품 등 | 본교기준 2~3명 |
| 4 | 50%~100% | 1) 급식대용품(빵, 우유, 떡 등) 제공 2) 학생도시락 지참 3) 급식대용품(빵, 우유, 떡 등)+학생도시락 지참(희망자) | 본교기준 4~7명 |

3. 식재료 EAT계약 방법

2016.5.1.부터 식재료 EAT 계약이 의무화되어 본교는 매월 친환경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식재료 계약실시하고 있으나 7,8월 여름방학 12,1,2월 겨울방학 관련 급식일수가 15일 이 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식재료 계약으로 개월 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.